

준불연 로이보드 외단열(남부지역) 성능 기준표

W1					W2					W3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함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함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함									
번호	재료명	두께 D	열전도율 λ	열관류저항 r	열관류율 K	번호	재료명	두께 D	열전도율 λ	열관류저항 r	열관류율 K	번호	재료명	두께 D	열전도율 λ	열관류저항 r	열관류율 K		
		M	W/mk	m ² k/W	W/m ² k			M	W/mk	m ² k/W	W/m ² k			M	W/mk	m ² k/W	W/m ² k		
1	실내표면열전달계수Ro	-	-	-	0.24	1	실내표면열전달계수Ro	-	-	-	0.320	1	실내표면열전달계수Ro	-	-	-	0.320		
2	석재	0.03	-	-		2	석재	0.03	-	-		2	조적	0.09	-	-		-	-
3	공기층	0.05	-	-		3	준불연 로이보드	0.04	-	-		3	준불연 로이보드	0.04	-	-		-	-
4	준불연 로이보드	0.04	-	-		4	콘크리트	0.15	-	-		4	콘크리트	0.15	-	-		-	-
5	콘크리트	0.15	-	-		5	실내표면열전달계수Ri	-	-	-		5	실내표면열전달계수Ri	-	-	-		-	-
6	실내표면열전달계수Ri	-	-	-		6						6							
7						7						7							
8						8						8							
9						9						9							
10						10						10							
합 계		0.27		4.166		합 계		0.22		3.125		합 계		0.28		3.125			
기준 열관류율 (W/m ² k)					0.320 이하	기준 열관류율 (W/m ² k)					0.320 이하	기준 열관류율 (W/m ² k)					0.320 이하		
* 동일구조체 시험성적서 참조 (공동주택 외 사용)					남부지역	* 동일구조체 시험성적서 참조 (공동주택 외 사용)					남부지역	* 동일구조체 시험성적서 참조 (공동주택 외 사용)					남부지역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 6조 건축부분의 의무사항

1. 단열조치 일반사항 (다)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측정값(시험성적서의 값)이 별표 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공기층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공 시에 공기층 두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m²·K)

건축물의 부위	지역	중부지역 ¹⁾	남부지역 ²⁾	계 구 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60 이하	0.360 이하
		공동주택 외	0.260 이하	0.320 이하	0.4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00 이하	0.370 이하	0.520 이하
		공동주택 외	0.360 이하	0.450 이하	0.62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한자 또는 거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2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0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출강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00 이하	1.4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800 이하	2.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600 이하	1.800 이하	2.500 이하
		공동주택 외	1.900 이하	2.200 이하	3.0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 이하	1.600 이하	2.2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2.000 이하	2.800 이하	

비 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경주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영주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